

- 김 해 상 공 회 의 소 -

제61호 주간기업정보

목 차

1. 기업지원 안내

- 1-1.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(진영읍·진례면·한림면·생림면·상동면) 수용성
절삭유 사용 사업장 대상 환경부 고시 개정 안내.....p1
- 1-2. 2020년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안내.....p2
- 1-3.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컨설팅 지원 안내.....p2
- 1-4. 2020년 경상남도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개발
사업 안내.....p2
- 1-5. 2020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.....p2
- 1-6.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2주 무료 서비스 안내.....p2
- 1-7. 2020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안내.....p2

2. 공지사항

- 2-1. 김해상공회의소 회원기업 회비납부 안내.....p3
- 2-2. 김해상의 코로나19 불가항력 사실 증명서 발급 안내.....p3
- 2-3. 김해상의 코로나19 기업애로 접수센터 안내.....p3
- 2-4. 김해자동차부품 기업협의회 회원가입 안내.....p3
- 2-5. 기업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무료이용 안내.....p3

3. 기타사항

- 3-1. K직업환경연구소 보건관리위탁 안내.....p4





김해상공회의소 주간기업정보

제61호
(2020년 4월 28일)

담당자	이 변 중 창 현
전화번호	337-6001
팩스번호	337-6006

이 자료는 김해상공회의소가 유관기관에서 안내·공고한 최신 법개정내용, 자금, 인력 등 기업경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문 특화하여 요약 제공하며 상세내용은 해당기관 또는 김해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김해상공회의소 홈페이지 gimhaeccikorcham.net 주간기업정보란에 게재)

1. 기업지원 안내

1-1.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(진영읍·진례면·한림면·생림면·상동면) 수용성 절삭유 사용 사업장 대상 환경부 고시 개정 안내

□ 고시 주요 개정사항

- 고시 시행일(2020. 4. 1)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전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금속가공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, 아래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입지 허용
 -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시설
 - 하천인접지역 범위 밖에 설치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·군수에게 산업단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2028. 12. 31(일)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(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증설되는 시설 제외)
 - 하천인접지역 범위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2021. 12. 31(금)까지 산업단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. 12. 31(화)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(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증설되는 시설 제외)

□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자 준수사항

- 폐절삭유가 함유된 폐수를 저장·보관하는 용기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고,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,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
- 폐수 저장·보관 설비(장소)에 저장·보관 용기의 용량, 저장·보관된 폐수량, 특정수질유해물질 경고 문구, 관리하는 환경기술인의 성명을 포함한 표지판 부착(설치)
- 절삭유 사용량(원료사용량), 폐절삭유 위탁·보관량을 빠짐없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에 기재하여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김해시장(수질환경과장)에게 제출
- 수용성 절삭유가 함유된 폐수는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, 실외 저장·보관 시 저장·보관설비 주위에 방류벽을 설치하고, 빗물이 저장·보관용기 및 방류벽 안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내수성 지붕을 방류벽 면적 이상으로 설치

□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·신고 기한

- 산업단지에 설치된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: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그 외의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: 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전

□ 준수사항 미이행 또는 무허가/미신고 사업장 조치사항

- 추가조사를 통하여 수용성 절삭유 사용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류벽 설치 등 준수사항 미이행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·신고 기한 이내 인허가 득하지 않을 시 사업장 고발 및 폐쇄명령

□ 관련법령

- 『물환경보전법』, 『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』 (환경부고시 제2020-60호, 2020. 4. 1)

□ 고시·안내 : 김해시청 수질환경과 자료실

김해상공회의소 공지사항

1-2. 2020년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안내 - 사업목적 :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을 견인하는 김해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- 지원대상 : ① 제조 중소기업, 지식기반서비스업 ② 관내 본사·주사업장 소재 ③ 창업 3년 이상(IT, SW관련 기업 2년 이상) ④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 평균 20억원 이상 - 지정기간 : 5년(전용지원 1년차, 연계지원 1~5년차) - 지원내용 : 50백만원(기업자부담 20%(현금 또는 현물) 별도) - 접수기간 : 2020. 4. 10.(금) ~ 5. 8.(금) - 공 고 :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사업공고 - 문 의 처 :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기업성장팀 (☎ 055-310-9231~4)	1-3.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컨설팅 지원 안내 - 사업목적 :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 예정인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 100과 관련하여 경남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- 지원내용 : 소재부품장비 강소 100 컨설팅 지원(지원금액 10백만원 내외) - 신청자격 : 경남지역에 소재·부품·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재부품장비 강소 100에 신청할 기업 - 신청기한 : 2020. 5. 15(금) 까지 - 공 고 : 경남테크노파크 사업공고 - 문 의 처 : 경남테크노파크 성장지원팀 (☎ 055-259-3358)
1-4. 2020년 경상남도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개발 사업 안내 - 사업내용 :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개발 - 지원대상 : 경상남도 내 사업장이 등록된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기업 - 지원내용 : 대상 기자재 운용환경 및 손상모드 분석,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- 접수기한 : 2020. 4. 20(월) ~ 5. 1(금) 까지 - 공 고 :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공지사항 - 문 의 처 :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통상교류팀 (☎ 055-310-9212)	1-5. 2020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- 사업내용 :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·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- 지원대상 :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 - 지원내용 : ①기초 마케팅 지원 ②마케팅 및 수출 지원 ③수출 및 현지화 지원 - 신청기한 : 2020. 4. 21(화) ~ 2020. 6. 6(토) 까지 - 공 고 :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알림마당 - 문 의 처 :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망기업팀 (☎ 02-3460-7439)
1-6.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2주 무료 서비스 안내 - 내 용 :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 위함 - 지원대상 : 김해시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- 지원내용 : 이용료 무료 - 지원기간 : 2020. 4. 27(월) ~ 5. 8(금) 까지 ※ 주말, 공휴일, 근로자의날 제외 - 지원방법 : 직접방문, 30벌이상 방문수거, 배송 - 문 의 처 : 가야클리닝(☎ 055-259-3362) 김해지역자활센터(☎ 055-329-6373)	1-7. 2020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안내 - 사업내용 : 창업일 이후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한 경상남도 소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- 지원내용 : 신청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(6개월 이내) 지원 - 신청대상 : 경상남도 내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제조기업 - 신청기한 : 2020. 4. 20(월) ~ 예산 소진 시 까지 - 신청방법 : 우편 및 방문접수 - 공 고 : 김해시 공지사항 - 문 의 처 : 김해시 미래산업과 (☎ 055-330-4784)

2. 공지사항

2-1. 김해상공회의소 회원기업 회비납부 안내

- 회원자격 : 김해상공회의소는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정 경제단체이며 상공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대변기관으로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법적으로 상공회의소 회원임
- 상공회비 : 매출세액(과세.영세.면세.금액 합산 매출액×10%)×2/1,000(정부인가 회비부과율)
※ 상공회의소 회비는 손비 및 필요경비로 100%인정(손금산입, 세금감면 혜택)
- 상공회의소 회원 혜택 : ① 근로자자녀 장학금 선발·지급
② 창립기념일, 회사증축(이전), 신기불발명 등 사내 각종행사 지원
③ 기업CEO 및 근로자 해외경영정보연수
④ FTA, 일반원산지증명서(C/O) 등의 무역관계 서류 무료발급 등 다양한 혜택 有
- 2020년 1기 회비부과 : 상공회비 고지서 개별우송(2019. 1월~6월 매출액기준 부과)
※ 상공회의소법 제 14조(회원 등의 의무)에 따라 상공회비 납부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
- 문 의 처 : 김해상공회의소 총무부(☎ 055-337-6001)

2-2. 김해상의 코로나19 불가항력 사실 증명서 발급 안내

- 목 적 :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도움되고자 함
- 대 상 :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간 내의 국제무역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회원기업
- 주요내용
 - 김해상공회의소의 회원사임을 증명
 - 대한민국 및 김해시가 코로나19 전파에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하며 편의를 베풀어주실 것을 요청
 - ※ 단 불가항력 사실 증명서에 따른 책임 면제 여부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 내지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관련 요건과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- 문 의 처 : 김해상공회의소 통상사업부(☎ 055-337-6001)

2-3. 김해상의 코로나19 기업애로 접수센터 안내

- 목 적 : 최근 발생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함
- 지원내용
 - 기업애로해소 상시지원 : 기업애로상담센터 상시운영
 - 현장방문반 운영 : 애로기업 현장방문(유관기관 합동방문)
 - 기업애로 유관기관 건의 : 고용노동부, 경상남도, 김해시, 국세청 등
- 문의 및 애로사항접수처 : 김해상공회의소 경영사업부(☎ 055-337-6001)

2-4. 김해자동차부품 기업협의회 회원가입 안내

- 내 용 : 김해상공회의소는 지난 2019.11.28.(목) 김해지역 대표업종인 자동차부품 업종 기업들 간의 경험과 지식 교류, 인적네트워크 형성, 기업애로해소 등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「김해자동차 부품 기업협의회」를 창립하였습니다. 「김해자동차부품 기업협의회」에서는 김해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 간 상호교류협력 및 자동차부품업종 활성화와 지역 대표 협의회를 만들어가고자 신규회원을 계속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참여대상 : 김해지역 자동차부품 업종 기업 대표자 및 임원
- 참여방법 : 가입 신청서 작성(김해상의 접수), 연회비 납부
- 문 의 처 : 김해상공회의소 통상사업부(☎ 055-337-6001)

2-5. 기업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무료이용 안내

- 사업내용 :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무료제공, 입찰실무교육
- 대상기업 : 김해지역 소재기업(법인, 개인)
- 지원내용 : 조달청, 정부투자기관, 민·관 발주기관 등의 시설(공사)·용역·물품(구매)·매각 입찰 정보 제공
- 이용절차 : 김해상공회의소 입찰정보 홈페이지(<http://gimhaecci.bidpage.co.kr>) 무료 회원가입 후 이용
- 문 의 처 : 김해상공회의소 경영사업부(☎ 055-337-6001)

3. 기타사항

3-1. K직업환경연구소 보건관리위탁 안내

□ 사업내용

-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(보건관리자 등) 및 시행령 제20조(보건관리자의 선임 등), 제23조(보건관리업무의 위탁 등)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 및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지원

※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 관련 법규

연 번	산업안전 보건법	제 목 (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119조)	적용인원	과태료(만원)
1	법 제16조	관리 감독자 지정 운영	50인 이상	300/400/500
2	법 제24조	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	50인 이상	500/500/500
3	법 제62조	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 지정	50인 이상 도급 사업장	
4	법 제75조	산업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	도급 사업장	50/250/500
5	법 제110조	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, 표시, 교육	전 사업장	100/200/500
6	법 제29조	안전보건교육 (정기, 배치 전, 작업내용 변경, 특별)		10/20/50(인)
		안전보건교육(관리 감독자)		50/250/500(인)
7	법 제34조	법령 요지의 비치 및 게시		50/250/500
8	법 제108조	위험성 평가 자료 미 제출		300/300/300

□ 사업목표

- ① 생산성 향상
 - 기업이윤환원
- ② 질병 예방
 - 1인 생산성 향상, 결근 감소
- ③ 보건 관리
 - 작업환경관리, 근로자건강관리, 보건교육/건강상담, 건강증진지도
- ④ 건강 보호
 - 질병 이환율 감소, 장애자 의료비 감소, 작업 손실 수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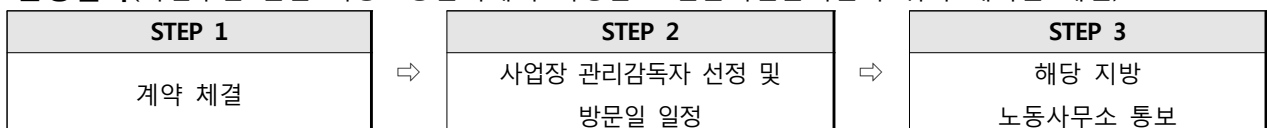
□ 주요업무

- ① 작업장 순회점검 지도
- ② 작업환경측정결과 사후관리 지도
- ③ 건강진단 실시결과 사후관리 지도
- ④ 직업병 발생원인조사 및 대책수립
- ⑤ 환경위생관리
- ⑥ 근로자 및 관리자의 보건교육 등

□ 방문서비스 주기

인 원 수	직 종		
	간호사	의 사	산업위생관리기사
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	1회/매월	1회/반기 (연 2회)	1회/분기 (연 4회)
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	1회/매월	1회/반기 (연 4회)	1회/격월 (연 6회)

□ 진행절차(사업주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)



□ 협력사 현황(업무협약 기관) : 베데스다병원, 영도병원, 이샘병원, 중앙U병원

□ 문 의 처 : WBC복지TV 부울경방송 K직업환경연구소 ☎ 070-7797-7689